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490호
- 나. 발 의 자 : 이석주 의원
- 다. 발의일자 : 2015년 5월 11일
- 라. 회부일자 : 2015년 5월 22일

### 2.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간단한 일상생활조차도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가 어려워 평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2014.5. 20.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 지원하고 재활 및 발달지원 등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후견인 선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정책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를 위하여 신청자에 대하여 개별지원계획 수립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하고, 의사능력이 충분하지 않고 보호자가 없는 발달장애인의 계좌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개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 또는 구에 설치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복지지원·위탁 등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아. 시장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7조제4항에 따른 계좌관리의 점검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다. 기타 :

## 5. 검토의견

### 가. 개요

- 이 조례안은 2014.5.20.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안 제5조)하고, 권리보장(안 제6조)과 복지지원 및 서비스(안 제7조)를 규정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안 제8조)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안 제9조) 등의 사항을 규정함.
- 본 제정안은 총 11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조문 배열>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권리보장)  
제7조(복지지원 및 서비스)  
제8조(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9조(지역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제10조(위탁)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부 칙

## 나. 조례 제정의 필요성 검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5.20. 제정, 2015.11.2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시장의 책무 등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임.
- 이 조례안은 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 다. 조항별 주요 검토의견

### 1) 기본계획, 복지지원 서비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안 제1조~제8조 관련)

- 조례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하여 그대로 수용한 것이 주요 내용임.
- 그런데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의 경우 시장의 직무로 규정하기 어려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17조까지<sup>1)</sup>로 구성된 “제2장 권리보장” 중 제9조에 근거한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관련 조항과 제10조 “의사소통지원” 조항의 일부분을 조례로 규정한 것임.

---

1)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10조(의사소통지원),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제15조(신고의무), 제16조(현장조사), 제17조(보호조치 등)

- 그러나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2015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2))에 따라 시도에서는 광역단위 사업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후견청구 심판 등 사업 시행은 자치구의 사무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서울시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상기 제1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 제2호 “의사소통지원” 관련 규정만 본 조례안 제6조 권리보장 조항으로 남게 됨. 그런데 이 내용만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항으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에도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이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조례안 제7조 복지지원 및 서비스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sup>3)</sup>

2) 사업추진체계 : 보건복지부-사업총괄(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기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에 관한 관리·감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시·도-광역단위 사업 조정(매칭 비율에 맞도록 지방비 확보, 교육기관 선정,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지원물량 배정, 시·군·구(읍·면·동)-사업시행(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발굴, 후견심판 청구, 심판절차 및 후견인 활동비 보조, 교육기관 관리·감독)

3)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조례안 제7조제1항 관련)

④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조례안 제7조제2항 관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을 계좌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계좌 관리를 점검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계좌관리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계좌관리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매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사항이므로 시장의 책무로 규정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상기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외하고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각 개별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상위법을 그대로 차용하여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입법의 경제성 측면에서 고려해 보아야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됨.

## 2)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안 제8조 관련)

- 조례안 제8조제5항의 경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법 제34조 제3항4)의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상 이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임을 고려할 때 임의규정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3) 지역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안 제9조 관련)

- 안 제9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한 별도의 조직으로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음.

- 그러나 현재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5)에 따라

---

4)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 조례에서 정한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9조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4) 위탁(제 10조 관련)

○ 조례안 제10조는 공공기관 또는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지정하여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직업재활시설이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sup>6)</sup>제2항의 직업재활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에서 상기 법 제25조제2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토록 규정한 직업재활시설을 시장이 비영리법인 등을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또한 동법 제41조제2항<sup>7)</sup>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공공기관

---

5)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제41조(위임·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 기타 의견

- 이 조례안의 일부 규정은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내용면에서 일부 차이는 있지만 그 목적과 대상, 취지는 같은 바, 위 조례안과의 중복 규정을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음.